

#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6. 2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6. 6. 22
- 다. 상정일자 : 96. 7. 1(제45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 수 철
- 나. 제안이유
  - .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한 군세 감면 확대로 관련규정 개정
- 다. 주요내용
  - .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군세(재산세,종토세)감면확대
    - ┌ 현행 :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
    - └ 개정 : 농가주택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
    - ┌ 현행 : 주택개량사업 계획 등에 의해 용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한자
    - └ 개정 : 주택개량사업 계획 등에 의거 대상으로 선정되어 용자 및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자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재휴)

- .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# 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#### 7. 첨 부 : 화순군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6. 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의 이유 :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함
2. 개정근거 : 지방세법 제9조, 동법 제294조  
전라남도 세정 13400 - 253 ('96. 3. 26) 호
3. 주요골자
  -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확대
    - . 현행 전용면적 85㎡ 이하를 100㎡ 이하로 개정하여 감면혜택을 확대
    - . 감면대상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
  - 전용면적 40㎡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감면토록 함
  -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 신설등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

## 화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" 사업으로 인하여 " 를 "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) 로서 " 로 하고 " 85제곱미터 "를 "100제곱미터" 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
2.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
3.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
4.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

제11조 제 1항 중 "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 의 " 를 "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"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(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 시설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 (중복감면의 배제)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문)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시한) 이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제3조 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비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 신 구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 (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<u>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 (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)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(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.</u></p> <p>1. <u>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</u></p> <p>2. <u>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</u>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&lt; 신 설 &gt;</p> <p>제11조 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을</p>	<p>제10조 (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) ---</p> <p>----- <u>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(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을 포함한다)로서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100제곱미터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</u></p> <p>2. <u>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</u></p> <p>3. <u>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</u></p> <p>4. <u>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</u></p> <p>제11조 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